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동향

오 태 곤*

Cybersquatting-related Precedent Tendency

Tae-Kon Oh *

요 약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 Keywords : 사이버스쿼팅, 도메인네임, 도메인분쟁, 인터넷주소관리기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

Abstract

Cybersquatting is a type of conflicts between a trademark and a domain, and refers to “behaviors of registering, retaining, transferring, and using the identical or similar domain name in bad faith for the profit from the mark such as trademark”. That is, it is preoccupying behavior to abuse the fact that the domain name in the Internet can be freely register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and can't duplicate. Though this should be prohibited, given the reality that most of our daily lives are based in the Internet, this is creating many problems in IT environment beyond social structure in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provides cybersquatting-related information and suggests legislative implications hereafter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quatting-related precedent from the Supreme Court.

▶ Keywords : Cyber-Squatting, Internet Domain Name, Internet Domain Dispute, ICANN, UDRP

•제1저자 : 오태곤

•투고일 : 2013. 11. 11, 심사일 : 2013. 11. 16, 게재확정일 : 2013. 11. 18.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College of Law, Chosun University)

I. 서론

일반적으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 함은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데, 이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을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한 행위이다.[1]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42호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제12조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금지를 규정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등을 등록하여서는 안 되고(제1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제2항).

그 후 2009년 6월 9일, 제9782호로 이 법을 개정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뿐만 아니라 그 ‘보유 또는 사용’에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등의 등록말소 외에 등록이전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제4조의 적용범위 또한 과거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인 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까지 확대 규정하였다.

이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 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유사 입법례로 미국에서도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Anti-Cybersquatting Protection Act: ACPA)”을 통해, ‘상표권자의 상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부정한 의도(Bad faith intent)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중개하거나(Traffics in) 사용한 등록인은 이 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법에서는 이 법 위반의 책임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를 통해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사이버스쿼팅에도 적용하여 이 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즉 “Microsoft Corp. v. Amish P. Shah et al. 판례”를 통해 ‘ACPA는 부정한 의도를 요건으로 하므로 ACPA 위반의 기여책임을 주장하는 상표

권자는 피고가 등록인의 상표권 침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등록인의 부정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3]고 판시하였고, “Ford Motor Co. v. Great Domains.com, Inc. 판례”를 통해 ‘ACPA의 위반은 등록인의 부정한 의도와 도메인 이름의 등록, 중개 또는 사용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오직 도메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사이버스쿼터(Cybersquatter)로서 책임을 부담한다.’[4]고 판시하였다. 양 판결 모두 ACPA의 관련 규정 입법의 불비를 관련 판례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및 판례 동향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 전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바,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II. Myspace Case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가 부정한 목적으로 B의 영업표지인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인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메인 이름을 B에게 이전하도록 명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동일도메인 이름분쟁해결정책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 법원에 B를 상대로 “본인(A)이 myspace.com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B의 myspace.com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5] 이에 대해 B는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지 않거나 A에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며, 본인(B)에게 동일도메인 이름분쟁해결정책과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 또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myspace.com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B는, A가 “myspac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개설한 웹사이트는 그 사용언어가 영어이고,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공되는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해 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A의 확인청구의 대상이 우리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우리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인용하며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2. A의 확인의 이익의 존부

B는 또, 본인(B)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A에 대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등록이전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ICANN의 UDRP(The Uniform Domain-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른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그 이전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와 별도로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 등을 갖는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A가 본인(B)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우리 법원은 A의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대해 A는 “UDRP 제4조 k항(6)에 따라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의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B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이전결정의 집행을 보류시키기 위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법률이 준거법이 되지만,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나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신에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MYSPACE”라는 영업상 표시와 유사한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는 금지할 수 있지만, 이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은 인정되

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III. Hpweb Case

1. 사실관계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A가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B회사가 A의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함으로써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ICANN의 UDRP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자, A가 우리 법원에 B회사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7]

2. 쟁점 및 판결요지

2.1. 부당이득의 발생지

구 협의사법(2001.4.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涉外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2.2. 부당이득 판단의 준거법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A가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정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받자, A가 B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이득이 발생한 곳은 B회사 본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2.3.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반환과 관련된 실체법적 권리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당시 B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B회사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있는지

를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관해서는 구 섭외사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준거법을 정해야 하며, 당해 사안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즉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 침해 결과가 발생한 미국법이고, 미국법에 의할 때 甲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행위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에 관한 15 U.S.C. §1125(d)(1)(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등록된 B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B회사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에 관한 15 U.S.C. §1116 규정에 의하여 A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제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미국 연방법상 15 U.S.C. §1125(d)(1)(A)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A는 15 U.S.C. §1116(2)(D)(v) 규정에 의하여 B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미국 연방법상 B회사에 도메인이름 사용금지를 구할 실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도메인이름 등록이 A에게서 B회사에 이전된 것을 두고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B 회사에 도메인이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IV. K2 Case

1. 사실관계

A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인 주식회사 아이네임즈를 통하여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 중이었고, B는 “K2”의 상표권자로서 1972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등산화 등의 상품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며, 전국적인 TV광고와 라디오, 지하철역 광고판 및 버스 외벽 등의 다양한 광고수단을 이용하여 위 상표들을 중점적으로 광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확보하였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본인(B)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8]

2. 쟁점 및 판결요지

2.1. 도메인이름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의 등록을 금지하는 취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2.2. 도메인이름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또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②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④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⑤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⑥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⑦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 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⑧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A가 B회사의 ‘K2’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 A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V. NCA Case

1. 사실관계

A는 ICANN으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으로 인가받은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사이네티티(www.cypack.com)에 “nca.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NCA Cheerleading, Cheerleading,

Cheerleading Music, Cheerleading Outfits, Cheerleading Shoes' 등의 단어를 포함한 각종 검색어를 나열하고, 성인용품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제3자의 웹사이트와 응원 의류·용품 등을 파는 업체들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한편, B(미국 법인, 벌서티 스피릿 코퍼레이션(Varsity Spirit Corporation))은 "NCA"는 미국 내 전국치어리더연합회(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의 약어로서 응원 의상 및 용품의 판매를 위해 1952년부터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7년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2008년 7월 21일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A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기에게 이전 등록하도록 명하여 달라는 분쟁처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10. 13.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 제4조 a항에 의해, [9] A에게는 그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고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B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A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조 제k항에 따라 B사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B사의 청구인에 대한 등록이전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도메인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 재확인 의 소를 우리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10]

2. 쟁점 및 판결요지

2.1.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에 있어 '정당한 권원'의 인정 요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2.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식성의 획득 여부

우리 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입법 취지, 동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6월 9일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VI.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스쿼팅의 방지"와 관련된 입법 및 판례 동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바, 그동안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한 대표적인 관련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일별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는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이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먼저 "Myspace Case"는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최초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국외의 언어로 국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 이와 관련된 확인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며, 확인의 이익 또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권 및 등록이전청구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ICANN의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의 이전청구권이 존재함을 판시하였으며, 다음 "Hpweb Case"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涉外 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 "K2 Case"에서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 행위는 규제하여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NCA Case"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내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외의 유명 단체와 유사한 도메인을 국내에서 먼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금지 또는 이전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된 국외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라도 인터넷과 유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IT환경은 우리에게 보다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스쿼팅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다 정의로운 IT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그 해결을 해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이버스쿼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타국의 입법례와 판결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국제적인 해결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Supreme Court 2013.4.26. Sentence 2011DA64836
- [2] 15 U.S.C. § 1125(d)(1)(A).
- [3] Microsoft Corp. v. Amish P. Shah et al., Case No. C-10-0653 RSM (01/12/11).
- [4] Ford Motor Co. v. Great Domains.com, Inc., 177 F. Supp. 2d 656 (E.D. Mich. 2001).
- [5]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7.8.30. Sentence 2006GAHAP53066.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2812&q=2006%EA%B0%80%ED%95%A95306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p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Searching at 2013.10.7)
- [6] Availability of Court Proceedings. The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 4 shall not prevent either you or the complainant from submitting the dispute to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or independent resolution before such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is commenced or after such proceeding is concluded. If an Administrative Panel decides that your domain name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ed or transferred, we will wait ten (10) business days (as observed in the location of our principal office) after we are informed by the applicable Provider of the Administrative Panel's decision before implementing that decision. We will then implement the decision unless we have received from you during that ten (10) business day period official documentation (such as a copy of a complaint, file-stamped by the clerk of the court) that you have commenced a lawsuit against the complainant in a jurisdiction to which the complainant has submitted under Paragraph 3(b)(xiii) of the Rules of Procedure. (In general, that jurisdiction is either the location of our principal office or of your address as shown in our Whois database. See Paragraphs 1 and 3(b)(xiii) of the Rules of Procedure for details.) If we receive such documentation within the ten (10) business day period, we will not implement the Administrative Panel's decision, and we will take no further action, until we receive (i) evidence satisfactory to us of a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ii) evidence satisfactory to us that your lawsuit has been dismissed or withdrawn; or (iii) a copy of an order from such court dismissing your lawsuit or ordering that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your domain name.

- [7] Supreme Court 2011.5.26. Sentence 2009DA15596.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632&q=2009%EB%8B%A41559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pt=&onlycount=

=&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Searching at 2013.10.7)

- [8] Supreme Court 2013.4.26. Sentence 2011DA64836. : [\[9\] a. Applicable Disputes. You are required to submit to a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the event that a third party \(a "complainant"\) asserts to the applicable Provider,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that \(i\) your domain name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a trademark or service mark in which the complainant has rights; and \(ii\) you have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respect of the domain name; and \(iii\) your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complainant must prove that each of these three elements are present.](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5116&q=2011%EB%8B%A46483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Searching at 2013.10.7)</p>
</div>
<div data-bbox=)

- [10] Supreme Court 2013.9.12. Sentence 2011DA5766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1461&q=2011%EB%8B%A45766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

&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Searching at 2013.10.7)

저 자 소개



오 태 곤

2001: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3: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2005: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IT Convergence
Email : t6713@naver.com